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57
----------	---------

제안일자 : 2016. 12. 20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공사감리자를 등록신청한 건축사는 사무소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음 (안 제18조의2제2항)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관련협회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의2제9항)
-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를 삭제하며 법령에 따른다.(안 제18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2제1항 중 “영 제19조의2제3항”을 “영 제19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개 권역의 명부”를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제출)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안 제18조의2제4항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 중 “각 호의 따른 사유”를 각각 “각 호의 사유”로 한다.

안 제18조의2제9항 중 “관련 협회 및 다른 기관”을 “관련 협회 등”으로 하며, 안 제18조의5를 삭제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신설></p>	<p>등록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 사항을 <u>통보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⑤ (생략)</p> <p>1. ~ 2. (생략)</p> <p>3. 제3항 각 호의 따른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p> <p>4. 제3항 각 호의 따른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p> <p>5. ~ 6. (생략)</p> <p>⑥ ~ ⑧ (생략)</p> <p>⑨ 시장과 구청장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u>관련 협회 및 다른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⑩ (생략)</p> <p><u>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업무 범위) ① 공사감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고시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p> <p><u>② 공사감리자는 해당 건축물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지의 안전 등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u></p>	<p>-----</p> <p>-----</p> <p>-----</p> <p>----- <u>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3. ----- <u>각 호의 사유</u>-----</p> <p>-----</p> <p>4. ----- <u>각 호의 사유</u> -----</p> <p>-----</p> <p><개정안과 같음></p> <p><개정안과 같음></p> <p>⑨ -----</p> <p>-----</p> <p>----- <u>관련 협회 등</u>-----</p> <p>-----</p> <p><개정안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구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를 “구청장(구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영 제19조의2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4개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제5항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로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감리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4.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 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제출)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 등록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 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3.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4. 제3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의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⑨ 시장과 구청장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사감리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등 다음 각 호의 조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에게 감리 지정을 위하여 민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2회 이상 감리 지정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사중지, 소음 등으로 장기간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감리 업무 진행 중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감리 수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은 제6조의3과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감리 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18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받아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 4대 권역 (제18조의2 관련)

구분	권역명	자치구
1	도심·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의 경우)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사감리 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 현황	위치					
	용도		구조		준공년도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층수	지상층
	건폐율	%	용적률	%		지하층
① 분쟁 발생 배경 및 원인						
②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인)

○○ 구 공사감리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내용이 많은 경우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및 첨부 가능함.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p> <p>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u>구청장(구건축민원전문위원회)</u>이 임명한다.</p> <p>1. ~ 6. (생략)</p> <p>③ ~ ⑤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6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구청장(구건축민원전문위원회)</u>이 성별을 고려하여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u></p> <p>1. <u>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u></p> <p>2. <u>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u></p> <p>3. <u>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영 제19조의2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u></p>

현행	개정안
	<p><u>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4개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u> <u>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u> <u>3. 제5항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로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u> <u>4.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 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u> <p><u>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u> <u>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u> <u>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하게 된 경우</u> <u>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제출)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u> <p><u>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 등록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u> <u>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u> <u>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u>

현행	개정안
	<p><u>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u></p> <p><u>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u> <u>2.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u> <u>3.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u> <u>4. 제3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u> <u>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u> <u>6. 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u> <p><u>⑥ 구청장은 제5항의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u>⑦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p><u>⑧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u>⑨ 시장과 구청장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u></p>

현행	개정안
	<p>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⑩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 받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사감리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 제18조의3(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등 다음 각 호의 조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에게 감리 지정을 위하여 민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2회 이상 감리 지정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사중지, 소음 등으로 장기간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감리 업무 진행 중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감리 수행 여부에 관한 사항 <p>② 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은 제6조의3과 제6조의4를 준용한다.</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감리 조정 신청서에 따른다.</p> <p><신설> 제18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현행	개정안
	<p><u>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u></p> <p><u>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u></p> <p><u>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받아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u>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u></p>